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9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9월 2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 사업장
조합원들
대전고법에서 노숙

24시간 노숙투쟁에 나선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 보취전장, 콘티넨탈의 조합원들이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고법에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6월부터 해왔지만 9월 15일부터는 24시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면서라도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숙투쟁을 시작한 지 벌써 1주일이 되었다.

사법정의를 살아있는지 지켜볼 것

검찰이 노조파괴 공범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은커녕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짓밟았다. 아무리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는 것이 검찰의 습성이지만 노조파괴 사건처럼 증거가 무수히 쏟아지는 사건까지도 불기소 처리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로 인해서 현장의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다. 해고, 징계, 임금차별, 인권 유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들이 여전하다. 사업주들이 검찰이 뒤를 봐준다는 자신감을 얻고나니 현장 탄압은 더 심해졌다.

이제 대전고법은 사법정의를 살아있는지 답을 해야한다. 지금 대전고법 앞에서 24시간 노숙투쟁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검찰이 짓밟아버린 사법정의를 법원만이라도 지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부탁이나 떼쓰기가 아니다. 법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라는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

법원의 재정신청 수용 여부는 9월말, 10월초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태도로 봐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이 나라 사법부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이미 이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있다. 당당히 민주노조의 힘으로 어용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 누가 옳았고 무엇이 정의인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사법부의 힘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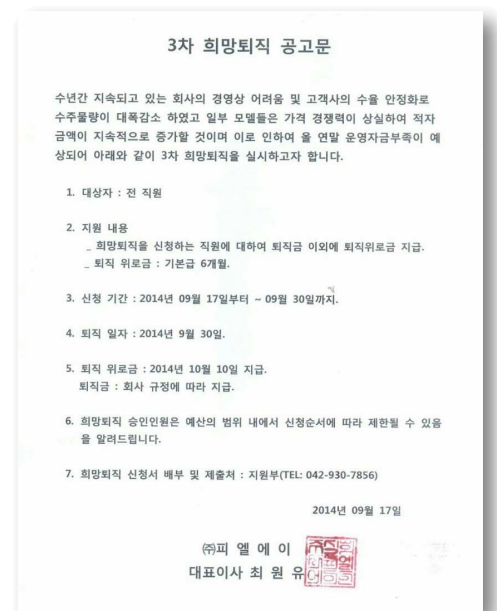
검찰도 노조파괴 공범! 법원이 해결하라!

PLA 또 희망퇴직 공고, 벌써 3차째

PLA가 지겨울만큼 끈질기게 희망퇴직 공고를 내고 있다. 벌써 3차째다. 8월 25일에 1차, 9월 1일에 2차, 그리고 9월 17일에 3차 희망퇴직이 공고되었다. 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 진행한다. 1차 6명 퇴직 이후 2차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도 PLA자본은 3차 희망퇴직을 내는 끈기를 보이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PLA에서 나가야할 사람은 공장장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경영정상화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한 공장장은 당장 공장을 떠나야 마땅하다. 현재 조합원들은 희망찬 일터,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사측과 대화할 의지도 충만하다. 그러나 공장장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조합원들을 내쫓겠다는 사람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

PLA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어느 기업이든 희망퇴직을 통해 인건비를 줄일 생각이라면 사무직부터 시작한다. 생산을 담당하는 현장직들부터 내보내진 않는다. 그러나 지금 PLA에서는 사무직 누구도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다. 자본도 현장 조합원들 대상으로만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 내쫓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울 생각이 뻔하다. 이런 뻔한 의도에 넘어갈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없다. PLA자본은 알뜰한 수작은 중단하고 지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법원 “모든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집단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9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현대차 전 공정에서 불법과건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오후 1시 50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 전원이 현대차와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한 원고 전부에 대해 피고인 현대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총 소송을 제기한 994명 중 신규채용되거나 소를 취하한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게 된 셈이다.

구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의 적용을 받는 931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소송도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931명 원고들이 모두 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피고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간주조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의무 조항의 적용을 받는 62명의 노동자는 2년이 지난 후 회사에 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각각 214억 4882만 원과 16억 492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엔진,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전 공정에 소속돼 있다. 결국 법원이 현대자동차 전 공정에서 불법과건이 이어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1900명에 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3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3년 10개월 가량 재판이 지연돼 오다, 18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에 제동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전교조 탄압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고법은 전교조 탄압을 위해 정부가 적용한 교원노조법 2조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조항에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간 정부는 6만여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에 단지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삼아 전교조의 법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했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뒤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하고, 강원과 울산, 경남지역 미복귀 전임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을 통보한 상태다. 또한 예산지원과 단체교섭도 중단해 법외노조 추진이 전교조 무력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를 전제로 진행된 전임자 학교 복귀, 단협 파기,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 후속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미복귀 전임교사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추진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 jswcool@naver.com



<9.16 대전고법 노숙투쟁>



<9.16 재정신청 수용 촉구 기자회견>



<9.17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결의대회>



<9.17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결의대회>